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규정

제정	2002. 2. 26.	규칙 제 1252호
개정	2003. 6. 11.	규칙 제 1392호
	2007. 4. 26.	규칙 제 1599호
	2007. 11. 1.	규칙 제 1631호
	2010. 3. 1.	규칙 제 1767호
	2014. 9. 22.	규칙 제 1971호
	2015. 10. 5.	규칙 제 20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 및 생명산업관련 산학연 협동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환경보전, 농촌지역사회의 개발, 농생명과학정보 등 농업생명과학제 분야 및 이와 관련된 진로와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를 관장하고, 연구비 관리지원, 학제간 연구의 기획 및 지원, 학술활동지원, 연구업적의 홍보와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원장 및 부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또는 학과(부)의 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협의·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리고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식물생명과학연구소, 생물자원·식품연구소, 식물환경과학연구소,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지역개발·조경연구소,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연구기획지원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에 소장, 센터장 및 실장을 두고, 소장, 센터장 및 실장(행정실장은 제외한다)은 부교수 이상의 겸무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각 연구소의 부장과 실장은 겸무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생명과학연구소는 식물 유전자원, 식물생명공학, 친환경생산기술, 식물 생산 시설 및, 수확 후 관리에 관한 연구
2. 생물자원·식품연구소는 생물시스템, 생물소재, 생물생산기반시스템, 식품, 생물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재료,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물환경과학연구소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환경인자와 식물간의 상호관계, 자원곤충의 이용 및 식물보호 등에 관한 연구
4.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는 환경자원의 조성, 이용관리 및 보전, 임산물을 포함한 환경재료의 기초원리 및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
5. 축산과학기술연구소는 가축의 생산과 축산물의 가공·이용 등에 관한 연구
6. 북한·해외농업연구소는 북한과 해외의 농업과 농업과학기술 등에 관한 연구
7. 지역개발·조경연구소는 지역개발과 농촌사회·경제, 인력개발, 조경계획과 설계, 환경·경관 영향평가, 관광휴양 등에 관한 연구
8.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는 농산업 관련 진로 및 직업 교육분야에 관한 연구
9. 연구기획지원실은 연구기획, 보육단계연구팀 육성 및 관리, 연구비 관리, 학술정보 수집관리, 학술활동의 기획 및 지원, 출판,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업무
10.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행정 등에 관련된 업무

④ 연구기획지원실에 보육단계연구팀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원장, 각 연구소 및 센터장, 실장,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교외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252호, 2002.2.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업개발연구소, 부설임업과학연구소, 부설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부속북한농업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각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구원이 승계한다.

부칙(제1392호, 2003.6.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99호, 2007.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31호, 2007.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67호, 20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71호, 2014.9.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호, 2015.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